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관계기관합동

I. 금융거래별 업무 매뉴얼	6		
1. 체크리스트	6		
2. 후견인 권한 등 확인 방법(후견등기사항증명서)	7		
가. 후견개시심판 확정	8		
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2		
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이해	13		
(1) 성년후견	13		
(2) 한정후견	14		
1)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15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17		
(3) 특정후견	17		
(4) 임의후견	19		
(5) 복수 후견인 선임	21		
3. 사무별 업무 매뉴얼	23		
가. 금융거래 일반	23		
(1) 필요서류	24		
(2) 금융거래업무를 후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25		
(3) 피후견인 본인이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5		
(4) 후견감독인의 동기가 필요한 경우	28		
(5)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경우	30		
(6)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32		
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	34		
다. 예금계좌 개설, 해지, 비밀번호 변경, 인감변경, 통장 재발행	35		
		라. 계좌이체 · 자동이체	36
		(1) 월 이체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36
		(2) 자동이체 신청	39
		마. 정기에 · 적금계좌 만기시 처리	39
		(1)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제한한 경우	39
		(2) 그 밖의 경우	40
		바. 담보대출	40
		사.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포함)	44
		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기) 사용	45
		자.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45
		(1) 체크카드, 직불카드	45
		(2) 현금카드	46
		차. 대여금고	47
		카. 피후견인이 상속인인 경우	48
		II. 금융거래 Q&A	50
		III. 참고. 성년후견제도 개요	56
		1. 도입배경	56
		2. 성년후견제도 내용	56
		가. 후견제도 개괄	56
		(1)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56
		(2) 후견개시 이후 사무수행과정	57
		나. 성년후견	58

(1) 성년후견의 의의	58	마. 임의후견(후견계약)	65
(2) 성년후견인의 권한	58	(1) 임의후견(후견계약)의 의의	65
(3)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59	(2) 임의후견인의 권한	65
(4)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권한분장	59	(3) 피임의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65
(5)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59	(4) 임의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권한 분장	65
(6)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60	(5)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66
(7) 후견 종료	60	(6) 임의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66
다. 한정후견	61	(7) 후견 종료	66
(1) 한정후견의 의의	61		
(2) 한정후견인의 권한	61		
(3)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61		
(4) 한정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권한 분장	62		
(5)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62		
(6)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62		
(7) 후견 종료	62		
라. 특정후견	63		
(1) 특정후견의 의의	63		
(2) 특정후견인의 권한	63		
(3) 피특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63		
(4)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권한분장	63		
(5)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64		
(6)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64		
(7) 후견 종료	64		
(8) 참고 : 공공후견제도	64		



1. 체크리스트

※ 본 체크리스트는 후견인과의 거래 시 최소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본인(실명) 확인 및 동의·위임 여부 확인 등 거래안정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절차와 관련해서는 은행 개별 규정에 따름

구분	확인서류	확인사항
필수서류	계좌명의인(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서류 확인, 원본 대조 후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 징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원본 징구. 위임장에 준하는 형식으로 동의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동의권 목록과 일치해야 함.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	법원 심판문 정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해진 업무들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한 사항	후견감독인 동의서	민법 제950조 ¹⁾ 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
대리권이 없는 행위	법원 심판문 정보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업무를 하려는 경우

1)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후견감독인이 대리하는 경우	필수서류와 동일 (단, 후견감독인 명의 서류) *추가 필수서류 : 법원의 허가 심판문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940조의6 제3항), 피후견인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동조 제2항),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복수(複數) 후견인 중 은행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후견인이 내방한 경우	은행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진 후견인의 위임장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신상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을 뿐, 은행업무 등 재산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후견인이 내방한 경우 또는 후견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데, 후견인 중 일부만 내방한 경우

2. 후견인 권한 등 확인 방법(후견등기사항증명서)

Q1. 후견인이 내방하였을 때 후견인이 맞는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확인함.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함.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함.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음.

참고로,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 분장 사항을 통해 내방한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Q2.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데, 그와 같은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후견인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함. 그러므로, “후견인”이라는 용어에 “법정대리인”이라는 용어가 내포된 것임.

Q3. 금융실명거래 시 가족관계서류 등과 같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인판결문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3개월을 초과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 업무를 처리해줘도 되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법률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음. 다만, 은행에서는 관행상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만약, 후견인이 3개월 초과된 것을 제시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개시사건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

검색화면상 관련사건에 “후견인 사임”, “후견인 변경”, “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후견인 해임”이라는 사건 명이 확인된다면, 주의하여 최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심판확정일과 특정후견기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후견개시, 후견인의 권한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가. 후견개시심판 확정

- 후견개시심판은 심판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되고, 이후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창설됨.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후견개시심판 확정일, 기본후견감독사건 번호 및 담당 재판부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음.

- 검색화면 중간부에는 이 사건과 “관련사건”들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20xx후기0000라고 기재된 사건들은 클릭하여 사건명을 확인할 수 있음. 이때 사건명에 “**후견인 사임허가**”, “**후견인 변경**”,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변경**”, “**후견인 대리권 수여**”라는 표시가 있을 때는 **후견인 또는 후견인의 권한에 변경이 있는 것이니 주의해야 하고, 최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함.**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 주소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나의 사건검색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특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동의없이 링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또는 다른 저장, 재가공 등 자료수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및 등산 경매사건검색은 비밀번호검색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원은택 송달로 조회에서 예남 은행번호로 본인의 사건번호 및 송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화형/파산 사건은 2023. 3. 1.일부터 수형화생번호 및 파산화생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8후기1
 652166- 새고침 음성듣기 652166- 검색

2016. 6. 17. 부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개인정보보호 및 무차별 정보수집 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입력방지문자가 도입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나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입력 값 설정: 법원명 가나다순 정렬 사건구분 가나다순 정렬 사건검색 결과 저장
 사건번호와 사건관련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필수로 입력하여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력예시)
 [주의] 검색한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체크 시 PC에 저장됩니다.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명 입력없이 사건내용이 바로 조회 되므로 PC발동 공공광소에서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 기능 사용 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채권입찰 등 기타집행 사건의 경우 제3채무자 명을 입력하여 사건검색을 할 수 없고, 기타집행과 (가)압류 등 말형성이 강조

(나의 사건검색 첫 화면)

나의 사건검색

사건번호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

빠르고 편리한 고품질 사법서비스
대법원 전자소송

본 사이트에서 제공된 사건정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특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일련내용 사건일련내용 인쇄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5

기본내용 검색메시지

사건번호	2021후기5	사건명	[전자] 성년후견 개시
청구인	이오주	상대방	
재판부	가사54단독(후견) (가) (전화:02-2055-...)		
접수일	2021.10.15	중결결과	2022.11.18 인용
병합구분	없음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증결에 따른 잔액조회		잔액조회	
판결도달일		확정일	2022.12.21

(사건검색 후 등장하는 첫 화면)

나의 사건검색

사건일련내용 사건일련내용 인쇄하기 나의 사건 검색하기

사건번호: 서울가정법원 2018후기1

기본내용 검색메시지

사건번호	2018후기1	사건명	[전자] 성년후견감독(기본)
청구인	(OOO)	상대방	
재판부	가사 단독(후견) () (전화:02-2055-...)		
접수일	2018.04.13	중결결과	2023.01.30 기각 (2022.12.12.피후견인사임)
병합구분	없음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금 증결에 따른 잔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총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2023.01.30

(피후견인이 사망하여 후견이 종료된 사실이 드러나는 화면)

후견인내용

앞의 후견인은 해임되고, 새로운 후견인이 선임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 때 앞의 후견인이 방문하였다면, 은행거리를 해줘서는 안 됨.

구분	이름	상태
후견인	1.	해임
후견인	2. 사어	선임

Top

(후견인이 해임되고, 다른 후견인이 선임된 사실이 드러나는 화면)

나의 사건검색

관련사건내용

법원	사건번호	구분
서울가정법원	2018노단51379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17노단53130	분양사건
서울가정법원	2018노단51379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18노단5374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18노단8917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19노단3169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19노단4306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19노단6121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20후기357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20후기380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110125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110202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10234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22후기10274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22후기110422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2023후기110030	후견사건

서울가정법원 관련사건이 다수일 때에는 비교적 최근의 사건을 클릭하여 검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사건들이 많은 경우, 비교적 최근의 사건을 클릭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21후기11

기본내용

사건번호	2021후기11	사건명	[전자]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인	(OOO)	상대방	
재판부	가사 단독 (후견) () (전화:02-2055-)		
접수일	2021.03.16	증국결과	2021.04.06 인용
병합구분	없음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료 증결에 따른 전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증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2021.04.27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후견인 변경사건이 확인되는 경우〉

사건일련번호 | 사건진행내용 | 인쇄하기 | 나의 사건 검색하기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후기110

기본내용

사건번호	2023후기110	사건명	[전자] 성년후견인 사임에 대한 허가
청구인	사OOX	상대방	
재판부	가사비송 단독 () (전화:031-920-)		
접수일	2023.01.20	증국결과	2023.03.16 인용
병합구분	없음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료 증결에 따른 전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증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최근기일내용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후견인 사임허가 사건이 확인되는 경우〉

사건일련번호 | 사건진행내용 | 인쇄하기 | 나의 사건 검색하기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3후기15

기본내용

사건번호	2023후기15	사건명	[전자]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청구인		상대방	
재판부	지 가사단독(비송) () (전화:031-850-)		
접수일	2023.01.02	증국결과	2023.01.16 인용
병합구분	없음		
상소일		상소각하일	
송달료, 보관료 증결에 따른 전액조회	사건이 종결되고 송달료 증결 혹은 보관금계좌가 종결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판결도달일		확정일	2023.02.01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서 후견인 권한 범위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피후견인의 인적사항, 후견개시심판,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사항, 권한 범위 등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임.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등기 고유번호 000230-2022-000

【사건본인】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구분	내용
1	후견등기기록작성	[성명] 오 [성별] 여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기] 서울가정법원 2022년 12월 21일 접수 제177 호

등기일련번호 000230-2022-000859-

【성년후견사항】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용
1	성년후견개시	[심판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의표시] 2021후개5 성년후견 개시 [재판확정일] 2022년 12월 21일 [등기] 서울가정법원 2022년 12월 21일 접수 제177 호

(후견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용
1	성년후견인선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대리권등록목] 2022성년39 [등기] 서울가정법원 2022년 12월 21일 접수 제177 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인적사항, 후견개시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내역〉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① 사건본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②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에 대한 정보, ③ 후견개시심판 법원, 사건번호, 확정일, 등기번호, 대리권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전술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후견개시사건 번호를 검색해보고, 관련사건 중 “후견인 사임허가”, “후견인 변경”,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변경”이라는 사건명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하고, 가장 최신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함. 단, 이미 후견인 또는 후견인 권한범위 변경사실이 반영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고 온 경우에는 최신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닌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대체하여 확인할 수 있음.

(후견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용
1	성년후견인선임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사무소] [대리권등록목] [등기] 가정법원 2018년 4월 일 접수 제 호
1-1	대리권등록목변경	[대리권등록목] 2018성년 [심판법원] 가정법원 [사건의표시] 2018노단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재판확정일] 2018년 12월 일 [등기] 가정법원 2018년 12월 일 접수 제 호
1-2	성년후견인변경	[법인명] 사단법인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심판법원] 가정법원 [사건의표시] 2021후기1 성년후견인 변경 [재판확정일] 2021년 4월 일 [등기] 가정법원 2021년 4월 일 접수 제 호

〈이미 후견인 변경, 권한범위 변경사실이 반영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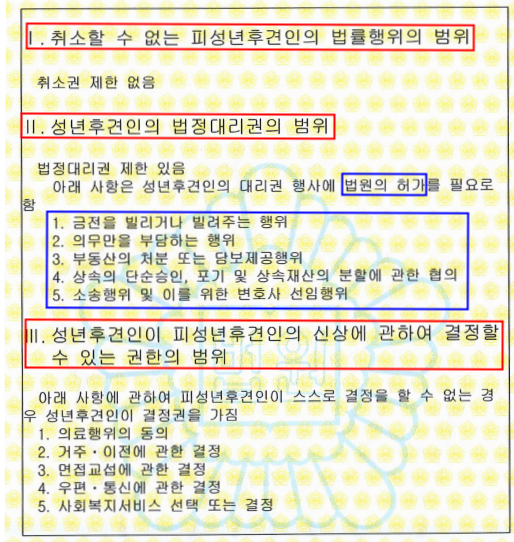
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이해

(1) 성년후견

Q4. 성년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데, 금융거래업무를 전부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 그러므로 금융거래에 대한 업무도 모두 대리할 수 있음. 다만, 대출행위, 부동산 담보제공과 같은 행위들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음.
- 그러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대리권등록목에 기재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한 허가심판문을 확인**해야 함.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를 일부 제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내역〉

(2) 한정후견

Q5.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업무 가능여부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예금 등의 관리”-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로 기재되어 있고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예금 등의 관리”-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등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모두에게 가능한 업무인 것인지?

(1) 피한정후견인 :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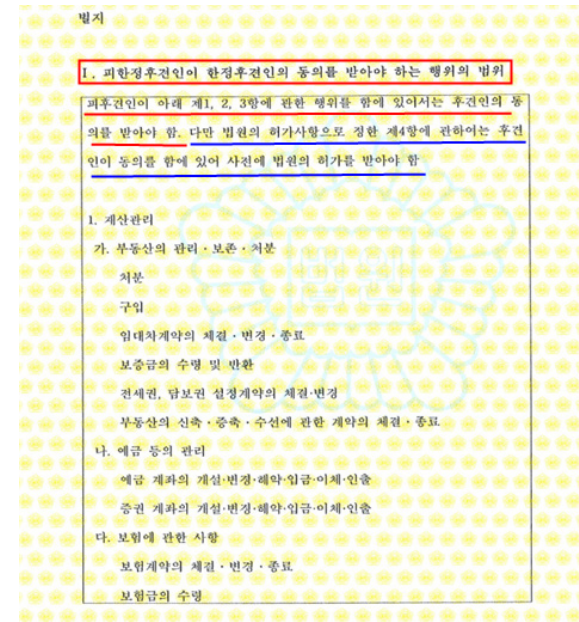
(2) 한정후견인 :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금 등의 관리행위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한정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임.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가 주요로 되는 법적으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확히 명시된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그에 반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은 피한정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기재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들도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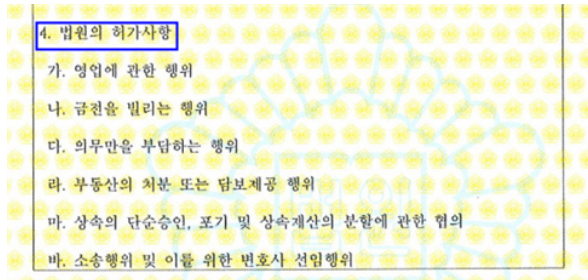
1)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대리권등목록 부분에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이 기재되어 있음.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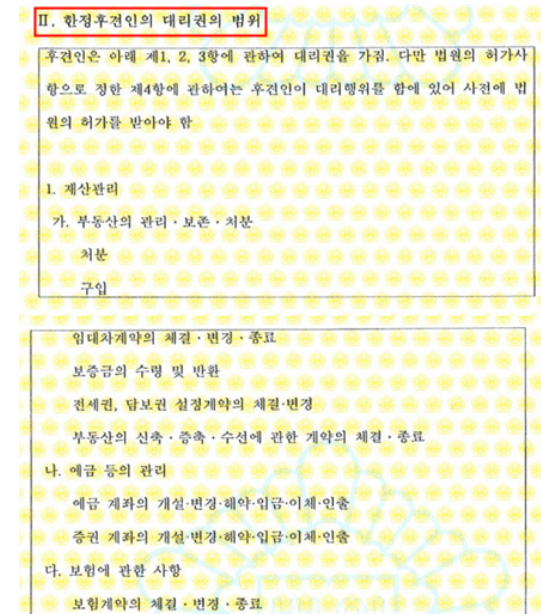
- 위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해석하면, 피후견인이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예금 등의 관리, 보험에 관한 사항의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법원 허가사항 예시〉

- 다만,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의 경우, 후견인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경우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2)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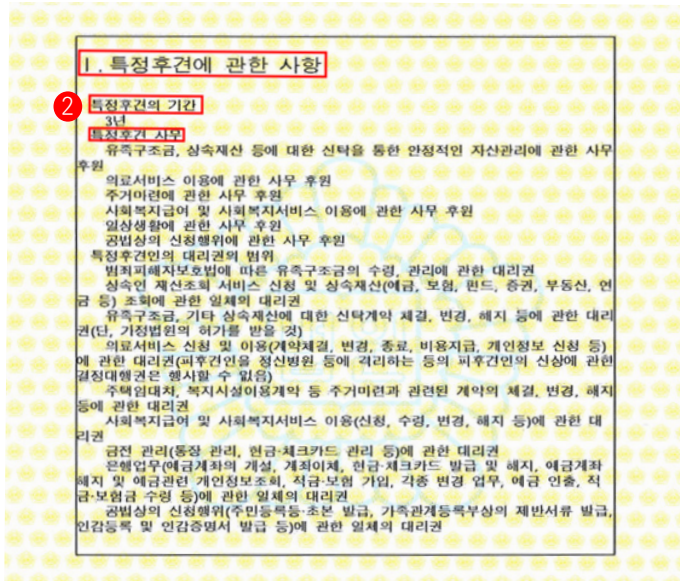
- 위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해석하면, 후견인은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예금 등의 관리, 보험에 관한 사항의 재산관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정후견인이 특정 법률행위를 대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함.

(3) 특정후견

- 특정후견은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후견기간**이 정해져있음.
- 이에 ① “**재판확정일로부터**” 대리권등목록에 기재된 ②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은 종료됨**.

【특정후견사항】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 용
1	특정후견	[심판법원] 서울가정법원 [사건의표시] 2019년4월50 특정후견인의 선임 [재판확정일] 2019년 4월 11일 [등기] 서울가정법원 2019년 4월 11일 접수 제3 호
(후견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 용
1	특정후견인선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대리권등록] 2019특경1 [등기] 서울가정법원 2019년 4월 11일 접수 제3 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재판확정일 확인 방법〉



〈특정후견의 기간 확인 방법〉

- 위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2019년 4월 11일에 후견이 개시되었고 기간은 3년이므로, 2022년 4월 10일 그 기간이 만료되어 후견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4) 임의후견

Q6. 후견계약서의 대리권등록에 기재된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근거로, 임의후견인이 피임의후견인의 예금 해지, 이체/출금 등 자산감소가 수반되는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한지

가능함. 계좌 이체, 출금 등 지급행위는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수반하는 행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임.

- 임의후견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등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이 확정”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함.

【임의후견사항】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 용
1	후견계약	[공증인] 서울동부지방법원청 소속 공증인 [증서번호] 공증인 사무소 작성 2018년 증서 제 1043호 [증서작성일] 2018년 11월 29일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12월 5일 접수 제2 호
(후견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 용
1	임의후견인선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사무소] [대리권등록] 2018임의1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18년 12월 5일 접수 제2 호
(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 용
1	임의후견감독인선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심판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의표시] 2021후개: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재판확정일] 2022년 9월 22일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22년 9월 30일 접수 제1 호

〈임의후견에 대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예시〉

- 위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2022년 9월 22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날부터 임의후견이 개시되었음을 알 수 있음.

대리권등목록	
1.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범위	
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 전부
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비의 송금, 생활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물품의 구입, 입료
나	연금 기타 사회보험급여 등의 신청 및 수령, 입료나 공공요금 등 정기적인 지출을 요하는 비용의 지출
다.	본 계약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각종 증명서 신청
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 신청
마.	우편물 기타 통신의 수령·개봉·열람
바.	본 계약 효력 발생 전 값이 계속하여 영위해 온 영업에 관한 행위
사.	값에 대한 신상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산의 멸실·훼손 염려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①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② 금전의 차용
아.	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송행위
자.	값이 소유하고 부동산에 관하여 일상적인 임대차 또는 임대차의 해지
2. 임의후견감독인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의 범위	
가.	값이 현재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관하여 매도, 전세권 설정, 지당권 설정,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는 것에 대한 결정
다.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행위. 다만, 동의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값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게

〈임의후견 대리권등목록〉

- 임의후견은 피후견인이 후견계약 당시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임.
- 따라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임의후견감독인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함.

(5) 복수 후견인 선임

등기일련번호		
【한정후견사항】 (후견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용
1	한정후견개시	[심판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의표시] 2020후개600 -성년후견-개시 [재판확정일] 2022년 7월 21일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년 7월 22일 접수 제1호
1-1	사건의표시경정	[사건의표시] 2020후개600 -성년후견개시, 2021브 한정후견개시 [사유] 2022년 7월22일 착오발견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년 7월 22일 접수 제1호
(후견인에 관한 사항)		
사항번호	등기목적	내용
1	한정후견인선임	[성명] 유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사무소] [대리권등목록] 2022한정2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년 7월 22일 접수 제1호
2	한정후견인선임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사무소] [대리권등목록] 2022한정2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년 7월 22일 접수 제1호

〈후견인이 여러 명 선임된 예시〉

- 후견인이 여러 명 선임된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도 후견인의 인적사항이 1, 2로 나뉘어 기재됨.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한정후견인이 스스로 권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한정
후견인이 권정권을 가짐
1. 의료행위의 동의
 2.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4.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IV.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및 취소권, 재산에 관련된 대리권
은 한정후견인 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한정후견인 가 각 행사한다.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예시>

- 공동 한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대리권등록 부분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

3. 사무별 업무 매뉴얼

가. 금융거래 일반

Q7. 금융실명거래 시 가족관계서류 등과 같이 성년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인판결문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한 변경 사항이 없을 시 3개월이 경과한 서류로 확인을 해도 되는지

7쪽 Q3 답변 참고

Q8.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됨.

다만, 채무변제, 세금 납부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아직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만 제출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음.

이때 후견인이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개시심판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Q9. 후견인 사임, 변경, 대리권 변경 등이 일어났으나,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보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이 책임지는지 여부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었던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으로 담당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지지 않음(민법 제129조). 다만, 이는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후견인이 아닌 피후견인의 가족 등 제3자가 이를 알려주어, 재차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이 후견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를 조사하며 금융기관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음. 그럴 때에도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될 것임.

후견종료(후견인 사임, 변경도 후견인 입장에서는 종료임)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임(민법 제959조, 제692조).

대리권 변경 역시 마찬가지임(민법 제129조).

Q10. 처리가능한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예금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등)에 대한 대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봄. 대리권의 범위는 그 권한과 부수관계에 있는 사항이나, 부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본래의 사항과 관련이 있고, 본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치지 때문임.

(1) 필요서류 : 이하 모든 거래에서도 동일하게 징구해야 하는 공통필요서류

※ 후견인과의 거래 시 최소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한 것으로 본인(실명) 확인 및 동의·위임 여부 확인 등 거래안정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업무절차와 관련해서는 은행 개별 규정에 따름

구분	확인서류	확인사항
필수서류	계좌명의인(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원본서류 확인, 원본 대조 후 원본대조필 날인한 사본 징구.

- 후견인이 처음 내접하였을 때, **계좌명의인(피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받고**, 그 내역을 확인함.
- 원본을 확인하였다면,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사본 등을 보관하고, 원본은 다시 후견인에게 반환함²⁾**.
- 후견인이 해임, 사임한 경우,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가 변경된 경우, 후견이 종료된 경우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인터넷 사이트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개시사건번호(Ex. 2023후개1234)와 피후견인명을 기입하여 검색한 뒤, 관련사건에 있는 후견감독사건(Ex. 2023후감1234)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음(전술 2.후견인 권한 등 확인 방법 참조³⁾).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확인할 것임.
- 아직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나 **병원비 납부, 채무변제, 세금 납부 등 급박한 사정**으로 금융거래가 필요하여 **후견인이 내접한 경우,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받아 금융거래 처리가능함**. 이때 후견인이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개시심판문을 통해 확

2)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는 법원에 방문하여 수수료 1,200원을 지불해야 하는바, 은행에서 원본을 수령하여 보관할 경우, 후견인의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함. (『채매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담당자를 위한 후견사무매뉴얼』(보건복지부, '20.5.19.) 106쪽 참고)

3) 현재 3개월 이내에 발행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는 식으로 실무가 운영되고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후견인이 사임, 해임, 대리권 범위 변경, 후견종료가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면 은행에서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동일함.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것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는 것임.

인할 수 있음.

- 만약 후견인 사임, 변경, 대리권 등 변경이 일어났으나, 은행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만 보고 업무처리를 한 경우,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었던 자가 그 사정을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지지 않음. 다만,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참고로, 후견종료(후견인 사임, 변경도 후견인 입장에서는 종료임)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고⁴⁾(민법 제 959조, 제692조), 대리권 변경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도 마찬가지임(민법 제 129조).

(2) 금융거래업무를 후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후견인 또는 후견법인”의 직원·대리인이 내접할 경우, 처리할 금융업무의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관계 확인서류 원본을 확인하여야 함. 이때 위임관계 확인서류는 계좌개설요청공문, 사용인감계 등이 있음.
- 위임장에는 금융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금융거래 내용 예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계좌해지, 지급정지, 지급정지 해제,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문자알림(SMS)서비스 신청 및 해지, 비밀번호 및 인감 변경, 통장재발행,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신청 및 결과를 수령하는 행위, 시크릿뱅킹 해지 신청, 인터넷뱅킹 관련 업무, 각종 금융거래, 보험계약 가입 내역 상세 조회

피후견인 계좌에서의 예금출금 및 세금, 공과금, 진료비 등의 납부 행위

00가정법원 2023후기0000호 심판에 따라 별지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00가정법원 2023후기0000호 심판에 따라 금 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행위

(3) 피후견인 본인이 방문하여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Q11.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

- 4) 후견종료 사실을 상대방이 알거나, 통지하지 않았다면, 후견종료에 따른 효과를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임.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다만, 피특정후견인이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피특정후견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한 후견인이 아닌 제3자가 방만한 경우 등 명백히 피특정후견인 본인의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후견유형	본인 가능 여부	확인사항										
성년후견	원칙: X											
한정후견	원칙: O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확인서류</th> <th>설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td> <td>한정후견인의 동의서</td> <td>동의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td> </tr> <tr> <td>한정후견인 신분증 사본</td> <td>한정후견인이 개인인 경우</td> </tr> <tr> <td>한정후견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td> <td>한정후견인이 법인인 경우</td> </tr> </tbody> </table>	구분	확인서류	설명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동의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한정후견인 신분증 사본	한정후견인이 개인인 경우	한정후견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한정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구분	확인서류	설명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동의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한정후견인 신분증 사본	한정후견인이 개인인 경우										
	한정후견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한정후견인이 법인인 경우										
특정후견	O	본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금융거래 처리 가능										
임의후견	O	상동										

-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라면, **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고객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됨.
-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은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후견인이 그를 대리하여야 함.
-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은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금융거래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없이 피후견인이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음.** 이때 피후견인이 한정후견인과 동행하거나,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면 금융거래 가능함.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되므로, 한정후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⁵⁾.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원칙적 행위능력자로서 행위능력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동의'와 '동행'은 엄연히 구별되는 점, ② 100만 원 이상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하기는 하나 한정후견인의 동행까지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한정후견심판을 통해 제한된 원고들의 행위능력 범위를 초과하여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예금거래 조치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거래조치는 100만 원 이상 거래 경우에도 역시 원고들의 지적장애를 사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드시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86347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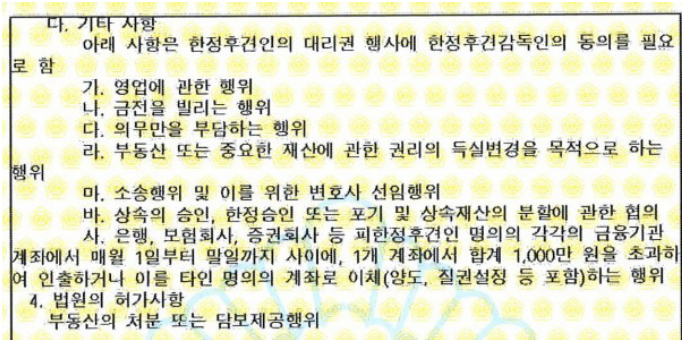
- 참고로 대리권을 보유한 한정후견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피한정후견인이 동행하여 내접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특정후견이나 임의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후견인은 **항상 단독으로 유효하게** 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8.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내접한 피한정후견인에게 한정후견인 동행을 요구하며 금융거래를 거절한 우체국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4)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다음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함⁶⁾.

1. 대출(민법 제950조 제1항 제2호)
2. 채무인수, 연대채무의 부담, 보증담보제공(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3.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행위(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
4.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된 사항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기재된 모습〉

- 후견감독인의 동의는 동의서로 확인함.

6)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민법에서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성년후견, 한정후견에 대한 민법 제95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959조의6 참조),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어느 유형이든 일단 감독인이 선임되면 대출, 담보제공행위에 대하여는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동의여부 및 법원의 허가심판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됨.

〈후견감독인 동의서 예시〉

동 의 서

- 성년후견인 : 000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피성년후견인 : 000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성년후견감독인 : 000 또는 00법인 00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법률행위

피성년후견인(000) 명의 00은행 우리아파트론(일반)

가계일반대출 기간연장 행위

계좌번호: _____

금액 : *억 원

연장 후 기한 : 202*년 *월 **일

본 성년후견감독인 000은 성년후견인(000)이 상기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첨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20**.*.**.

성년후견감독인 00법인 00
대표자 이사 000 (직인날인)

(5)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경우

구분	확인서류	확인사항
후견감독인이 대리하는 경우	필수서류와 동일 (단, 후견감독인 명의 서류) *추가 필수서류 : 법원의 허가심판문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민법 제 940조의6 제3항), 피후견인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동조 제2항),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함(민법 제940조의6 제3항). **후견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해상반행위⁷⁾**.

7) 피후견인은 소득이 거의 없어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소득이 있는 후견인이 대출을 받되, 담보로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서울가정법원

심판

사건 2020후기10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구인 **A**
(성년후견감독인) 주소 서울

사건본인 **B**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참가인 **C**
(성년후견인) 서울

주문

1. 청구인(성년후견감독인)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1 기재 각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참가인(성년후견인)은 제1항에 따라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이 차용한 돈의 사용내역(증빙서류 포함)이 포함된 후견사무보고서를 청구인(성년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성년후견감독인)은 제1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원 2017년단2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것을 허가한 심판문〉

별지 1.

허가하는 행위

1. 청구인(성년후견감독인)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후견인**, 근저당권자 **후견인**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청구인(성년후견감독인)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후견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행위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것을 허가한 심판문 별지〉

-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민법 제940조의6 제2항). 여기에는 금융거래도 포함됨.
- 재산에 대한 급박한 사정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 납부기한이 도래한 세금 납부 등이 있음.
- **실무상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행위들에 대하여는 모두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그에 대한 법원 허가심판문을 확인해야 함.

(6)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Q12. 최근 심판문을 보면 후견인을 공동으로 선임이 되어 있고,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예) 성년후견인으로 A, B를 선임한다.
 위 각 권한은 성년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금융거래에 있어 월간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인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질의) 1. 잔액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정보제공 성격의 업무 처리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요청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3. 금융거래제한 내용에 따른 인출한도등 금융거래제한 사항 등록 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1.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2.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3. 은행이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이므로,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할 일이 아님.

-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통상 재산에 관련한 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분리하여, 후견인 일방에게 부여하고 있음.

IV.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 및 취소권, 재산에 관련한 대리권은 한정후견인 **A** 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한정후견인 **B** 가 각 행사한다.

〈복수 후견인 사이에 권한이 분장되어 있는 모습(한정후견)〉

IV.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 재산과 관련한 대리권은 성년후견인 **A** 이 행사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성년후견인 **B** 가 행사한다.

〈복수 후견인 사이에 권한이 분장되어 있는 모습(성년후견)〉

- 재산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후견인이 내점하였을 때는 단독 후견인일 때와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면 됨.
-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후견인이 “**각자**”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 중 **일방만 내점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IV.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위 각 권한은 한정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음

〈후견인들이 권한을 “각자”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예시〉

- 재산에 관한 대리권을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 전원이 내점하거나, 다른 후견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음.
- 재산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후견인이 내점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그 후견인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음. 다만, 재산에 관한 **대리권이 있는 후견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그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거래내역서,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대출이자 납입 내역서,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

Q13.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업무 가능여부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예금 등의 관리”-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로 기재되어 있고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예금 등의 관리”-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등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모두에게 가능한 업무인 것인지?

14쪽 Q5 답변 참고

Q14.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인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 및 잔액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처리해줘야 하는지

계좌이체 등 예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융거래정보 조회업무는 처리해줘야 함.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하는데, 이때 후견인은 종료 1개월 이내에 관리에 대한 계산을 하여 최종 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민법 제957조 제1항), 이 보고서에는 잔액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발급해줘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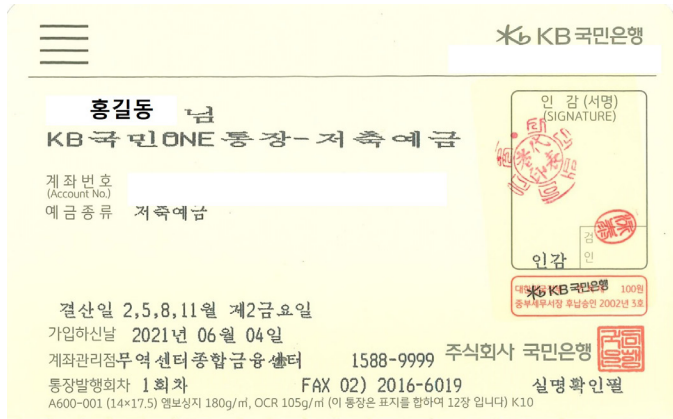
또한, 후견이 종료되더라도, 후견인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는바(민법 제959조, 제691조),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조회 업무는 전술한 후견인의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함.

- 후견인은 **최초 내방시**, 후견개시 후 **매년** 잔액증명서, 모든 예금계좌 거래내역, 부채증명원 등의 발급신청을 함.
- 후견개시 계좌로 등록할 때 기존 신용카드,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정지할 경우, 피후견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피후견인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체세공과금 납부가 카드에 연계되어 자동이체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 이용을 정지할 경우, 자동이체도 해지되어 공과금 납부가 연체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 그 밖에 최초 금융거래내역 조회시 참고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내용
예금 가압류 · 압류 존재	잔액증명서에 표시하여 발행
대출 존재	부채증명원 발급
시크릿뱅킹(특정지점에서만 조회, 거래가 가능한 계좌) 존재	조회가능한 관리점 안내
자동이체 신청 내역	조회 가능하면 알려줄 것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존재할 경우 카드 종류, 개수 등을 알려줄 것

다. 예금계좌 개설, 해지, 비밀번호 변경, 인감 변경, 통장 재발행

- 성년후견의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별도 제한이 없는 이상, 후견인이 위 행위들을 대리하여 처리할 권한이 있음.
-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의 경우, 후견인이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위 행위들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후견개시 이후 **후견인은 거래가 없는 계좌를 해지하고, 피후견인의 통장 재발행 · 인감 및 비밀번호 변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피후견인 명의 통장을 재발행하면서 후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통장 사본〉

라. 계좌이체 · 자동이체

(1) 월 이체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Q15. 예금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심판문상 은행 또는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각 은행별 (또는 전체 보유계좌 합산) 인출한도로 해석하면 되는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함. 담당자가 피후견인 명의의 타행 계좌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당행 계좌에 한하여 월 이체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나아가 매년 피후견인 명의의 당행계좌 전체의 인출액을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1개 계좌에서만 인출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임.

법원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인출할 수 있는 예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후견인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은행에게 예금인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예·적금을 제외하고, 인출금이 일어나는 계좌를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과 협의하면, 후견인과 은행 모두 업무처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임.

Q16. 예금인출 한도 제한 기간이 '월'(月)이 아닌 '년'(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로 해석해야 하는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액으로 계산해야 함.

Q17. 아래의 사례에서 2023년 1월 15일에 5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지?

- (1) 후견등기상 계좌별 매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2023년 1월 12일 1,000만 원 지급
- (3) 1,000만 원 지급 이외 별도 지급거래가 없음

1월 12일 1,000만 원 인출한 경우, 1월 인출한도는 이미 소진된 것이므로, 2월부터 500만 원 한도에서 인출가능함.

다만, 1,000만 원 인출에 대한 법원의 허가 심판 주문에 “월 인출한도 5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또는 “월 500만 원 인출한도와 별개로”라는 문구가 있다면, 1월 중에 추가하여 5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음.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1개 계좌에서 월 이체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후 지급. 이때 월 이체액에는 자동이체 신청금액도 포함됨.

- 법원에서 월 이체금액 상한을 정하는 것은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예방하고, 그 금액 이상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함임.

- 피후견인의 계좌 1개를 지정하여, 동 계좌에 월 한도액을 이체해두고, 그 안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하면 상한액 초과 지급 여부 확인에도 용이함. 이렇게 안내하더라도, 본래 목적에 반하지 않기 때문임.

- 월 이체금액 상한액을 초과하여 이체를 하려는 경우, **법원의 허가심판문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를 제출받아야 함.

- 그에 반해 피후견인 명의의 일체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합계 5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은행 또는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아래 그림 참조), 금융기관에서 피후견인이 가진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내역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을 것임.** 이때는 부득이하게 해당 금융기관의 피후견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월 이체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임.** 나아가 매년 피후견인 명의의 당행계좌 전체의 인출액을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1개 계좌에서만 인출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임.

- 월 이체금액 상한을 정해둔 예

II.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권 제한 있음
아래 사항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함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5.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6. 기타 사항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각각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1개 계좌에서 각 계좌별로 월 합계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계좌에서 금전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갱신 및 해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양도, 질권 설정 등 포함)하는 행위

〈월 이체금액 상한이 있는 사례 01(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례)〉

다. 기타 사항
아래 사항은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함

가. 영업에 관한 행위
나. 금전을 빌리는 행위
다.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라.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마.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바.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사.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피한정후견인 명의의 각각의 금융기관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1개 계좌에서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양도, 질권설정 등 포함)하는 행위

4. 법원의 허가사항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월 이체금액 상한이 있는 사례 02(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례)〉

산의 매도 등)에 관한 대리권

4. 대리권 행사시 법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가. 피특정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다만, 허가 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특정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 동의를 청구할 수 있음

나. 피특정후견인 명의의 일체 금융기관 계좌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합계 5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출금하는 행위

〈월 이체금액 상한이 있는 사례 03(피후견인 명의 일체 금융기관 계좌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

(2) 자동이체 신청

-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음.

- 후견인이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별히 “자동이체 신청, 해지 등에 대한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 처리 가능

마. 정기에 · 적금계좌 만기 시 처리

구분	해지 가능 여부	확인사항
성년후견인,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	해지 가능	법원허가 불필요 (사회통념에 반하는 경우 법원허가 필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감독인 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을 때에만 해지 가능	후견감독인 : 동의서 법원 : 허가심판문

(1)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법원 허가를 받도록 제한한 경우

- 은행 담당자 중 정기에 · 적금 해지에 앞서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하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법원 허가를 받도록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 정기에 · 적금 해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임⁸⁾.

8) 은행 중에는 정기에 · 적금을 해지하고 피후견인 명의의 당해 계좌에 이체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반해, 피후견인 명의의 타행 계좌에 이체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 정기에·적금을 해지하고, 피후견인 명의 다른 예금계좌(당행, 타행 불문)로 재예치하는 것이라면, **중요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허가 없이 처리 가능.**
- 그와 달리,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정기에·적금 해지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후견인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허가를 요구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현재 법원 실무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대리권을 제한함에 있어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다만, 미성년후견인의 경우,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기도 함.

(2) 그 밖의 경우

- 성년후견인, 대리권이 있는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임의후견인은 별도로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정기에·적금을 해지할 수 있음.
- 이와 달리, 만약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인이 정기에·적금을 해지하는데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이 되어 있다면,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바. 담보대출

구분	항목	확인사항
담보대출	최초 대출 실행 시	담보제공행위(근저당권 설정계약)와 대출계약에 대한 법원허가 심판문 필요
	추가 대출 시	추가 대출에 대한 법원허가심판문 필요 (채권최고액도 증가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대한 법원허가도 필요함.)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서 필요
	대출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 행위인 경우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 대리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 법원에서 별도로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이 피후견인 대리. (법원허가심판문상 대출행위를 대리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음.)

잘못된 업무처리임. (『치매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담당자를 위한 후견사무매뉴얼』(보건복지부, '20.5.19.) 102쪽 사례2-3 참고)

-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제공행위(근저당권 설정계약)와 대출계약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판문을 제출받아야 함.**

서울가정법원
심판

사 건 2023후기10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청 구 인 **후견인**
주소 서울

사 건 본 인 **홍길동**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 주 문**
1. 청구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성년후견인)은 제1항의 이행결과를 이행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원 2022 후갑10 성년후견감독(기본) 사건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동산 담보대출 허가심판문〉

[별지 허가하는 행위]

아래 부동산에 대한 다음 각 행위

고양시 **A아파트 101동 1001호**

1. 위 부동산 매각 및 이를 위한 계반사무 일체(단,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과 세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후전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야 함)
2.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행위(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포함)

〈담보대출 허가심판문 별지01〉

3. 피후전인 소유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 1동 1001호** 에 대한 다음 각 행위

나.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하는 행위(근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및 기타 담보대출을 위한 제반 사무 일체)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위 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과 주택연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등 제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및 기타 주택연금과 관련한 제반 사무 일체. 끝.

〈담보대출 허가심판문 별지02(주택연금가입계약 허가 포함)〉

별지. 허가 받고자 하는 행위

2. **A** 주식회사가 사건본인 소유 서울 **서초구 000번지** 를 공동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아래 대출채무를 연장하는데 동의하고, 위 토지를 계속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일체

대출일자	대출금	만기일
2017.3.24.	1,500,000,000원	2020.3.26.
2018.3.26.	140,000,000원	2020.3.26.

끝.

〈담보대출 허가심판문 별지03(피후전인 대주주인 회사가 피후전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장하고, 계속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

별지. 허가 받고자 하는 행위

1. 사건본인이 사건본인 소유 인천광역시 **A아파트 105동 1601호** 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아래 대출채무를 연장하는 행위, 위 토지를 계속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 일체

대출일자	대출금	만기일
2019. 9. 30.	100,000,000원	2022. 9. 30.

끝.

〈담보대출 연장에 대한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

-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추가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는 것과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판문을 제출받아야 함.**
- 추가대출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등 근저당권의 내용에 변화가 없으면, 대출계약에 대한 법원허가심판문만을 제출받으면 됨. 만약, **채권최고액도 증액해야 한다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허가도 기재된 법원허가심판문을 제출받아야 함.

-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후견인이 대출계약, 부동산 담보제공(근저당권 설정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허가심판문 외에도 후견감독인의 동의서가 필요함.**
- 후견인 명의의 대출에 대하여 피후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없고,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함. 만약,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함(민법 제949조의3, 제921조). 대출에 대하여는 법원허가심판문이 반드시 필요한데, 법원 심판 과정에서 후견감독인의 대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결정되므로, 은행에서는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 전술한 사항들에 대한 법원허가심판문을 확인하면 됨. 법원허가심판문에서 대리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후견인인지, 후견감독인인지, 특별대리인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임.
- 피후견인이 **거주할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Q18.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려는데, 임대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받을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피후견인이 임대인인 건물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은 임차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님. 임대인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법원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만약 피후견인이 거주하던 부동산(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함(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심판문이 필요하지 않음.

사. 신용대출(마이너스 대출 포함)

-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담보대출과 동일함.
- 마이너스 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이하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계약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판문을 제출받아야 함.
- 추가로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 법원허가가 필요함.

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기기) 사용

-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ATM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하고,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음⁹⁾.

피고 산하 은행에만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지적 장애를 사유로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의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100만 원 미만 거래에서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의한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후견이 개시된 고객에 대하여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86347)〉

자.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Q19.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발급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없다면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명확히 카드 발급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만 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성년후견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한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권한이 있음.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에 대한 대리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예금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이라는 기재만 있으면 충분함.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은 금융거래를 위한 부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임.

(1) 체크카드, 직불카드

- 성년후견인, 권한이 있는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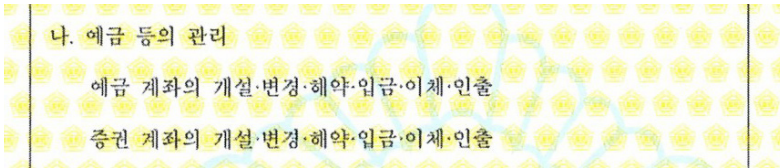
9) 거래처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하여 예금거래를 할 수 있음[예금거래기본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12호, 2022.12.23. 개정된 것) 제3조 등 참조]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예금계좌 개설, 변경, 해지, 통장 재발행, 비밀번호 변경, 인감등록, 인감변경, 체크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카드, 기타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ATM 기기에서 현금 출금, 입금, 조회 등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카드 포함) 발급·연장·해지·재발행·비밀번호 변경신청 등 예금의 관리에 관한 대리권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발급 등에 대한 대리권이 명시된 후견등기사항증명서(특정후견)〉

- 이 때 “**체크카드 발행**”에 대한 대리권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예금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거래를 위한 부수행위에 해당하는 체크카드 발급에 대한 권한도 보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임.**



〈일반적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 표시(한정후견).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발행은 이에 부수되는 행위이므로 대리권을 보유함.〉

-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체크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서도 안 됨¹⁰⁾.**
- 월 이체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체크카드 결제계좌에는 매월 이체 한도액만큼만 이체해두도록 해야 함. 그리고 동 계좌의 잔고가 소진된 경우라면 법원허가를 받아오도록 안내하면 됨.
- 직불카드도 위 설명과 동일함.

(2) 현금카드

- 현금카드는 ATM기기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발행을 거절하여서는 안 됨.
-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카드는 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권한을**

10) 체크카드 표준약관에 따르면이라도, 후견이 개시되었다는 것은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보유하고 있다고 봄.

- 월 이체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매월 이체 한도액을 특정계좌에 이체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행함.

차. 대여금고

- 피후견인 명의의 대여금고 대여기간이 만료된 경우, 후견인에게 연락하여 대여금고 개봉을 요청해야 함.
- 성년후견인은 대여금고 개봉에 대한 권한이 있고,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이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만약, 대여금고 개설 등에 관한 대리권을 보유한 후견인이, 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요청할 경우, 신규개설 가능한 대여금고가 있는지, 해당 고객의 대여금고가 갱신이 가능한 상황인지 등 담당 지점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하면 됨.

주 문

1. 청구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별지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청구인(성년후견인)은 대어금고 개봉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대어금고에 보관된 물건 목록(사건첨부)을 첨부한 제1항의 이행결과 보고서를 2016. 11. 30.까지 이 법원(2016년단(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되, 그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 심판 고지일로부터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을 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허가하는 행위

사건본인(피성년후견인) 명의 주식회사 은행 지점에 있는 대어금고를 개봉하고, 보관된 물건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행위. 다만, 대어금고 개봉 및 물건 확인과 목록 작성 현장에는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허용되고, 성년후견인은 현장에서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물건의 목록을 각각 작성하고 그 사진을 찍어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물건 확인과 목록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대어금고를 다시 봉인하여야 하고, 성년후견인이 대어금고 내부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취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끝.

<추정상속인들 사이에 대어금고 개봉에 대한 분쟁이 있어 성년후견인이 대어금고 개봉에 대하여 법원 허가를 받은 사례>

카. 피후견인이 상속인인 경우

Q20.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상속의 단순승인이 법원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 피후견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사망하여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후견인이 상속인인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상속인 재산조회를 위해 내점할 수 있음.

- 이때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업무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한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피상속인의 잔액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있음.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바(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은 이미 상속인인 피후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재산이기 때문임.
- 다만, 피상속인 명의 예금의 해지 및 지급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속이 개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신청 등에 따라야 함.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상속단순승인이 법원허가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피상속인 명의 예금 지급 전 법원 허가심판문을 확인해야 함.

※ “II. 금융거래 Q&A”에서의 Q&A번호는 “I. 금융거래 업무 매뉴얼”에서의 Q&A 번호와 다를 수 있음

Q1. 후견인이 내방하였을 때 후견인이 맞는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확인함.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함.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의 경우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있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함.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음.

참고로, 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 분장 사항을 통해 내방한 후견인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Q2.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라는데, 그와 같은 사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후견인과 같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이 되는 사람을 “법정대리인”이라고 함. 그러므로, “후견인”이라는 용어에 “법정대리인”이라는 용어가 내포된 것임.

Q3. 금융실명거래 시 가족관계서류 등과 같이 성년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인판결문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확인하고 있는데, 3개월을 초과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가지고 올 경우, 업무를 처리해줘도 되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법률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음. 다만, 은행에서는 관행상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만약, 후견인이 3개월 초과된 것을 제시한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개시사건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음. 검색화면상 관련사건에 “후견인 사임”, “후견인 변경”, “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후견인 해임”이라는 사건명이 확인된다면, 주의하여 최신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참고로 특정후견의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심판확정일과 특정후견기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Q4. 성년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데, 금융거래업무를 전부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 그러므로 금융거래에 대한 업무도 모두 대리할 수 있음. 다만, 대출행위, 부동산 담보제공과 같은 행위들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Q5.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업무 가능 여부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예금 등의 관리”-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로 기재되어 있고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예금 등의 관리”-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등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모두에게 가능한 업무인 것인지?

- (1) 피한정후견인 :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2) 한정후견인 :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금 등의 관리행위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한정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임.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법적으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확히 명시된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그에 반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은 피한정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기재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들도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

Q6. 후견계약서의 대리권등목록에 기재된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근거로, 임의후견인이 피임의후견인의 예금 해지, 이체/출금 등 자산감소가 수반되는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한지

가능함. 계좌 이체, 출금 등 지급행위는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수반하는 행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임.

Q7.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됨.

다만, 채무변제, 세금 납부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아직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만 제출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음.

이때 후견인이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개시심판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Q8. 후견인 사임, 변경, 대리권 등 변경 등이 일어났으나,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만 보고 업무처리를 하였을 경우,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책임지는지 여부

후견인 또는 후견인이었던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담당자에게 통지하는 등으로 담당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은행이 책임지지 않음(민법 제129조). 다만, 이는 담당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후견인이 아닌 피후견인의 가족 등 제3자가 이를 알려주어, 재차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이 후견인에 의한 경제적 학대를 조사하며 금융기관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음. 그럴 때에도 후견인에 대한 사정변경을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지 않은 경우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될 것임.

후견종료(후견인 사임, 변경도 후견인 입장에서는 종료임)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그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임(민법 제959조, 제692조).

대리권 변경 역시 마찬가지임(민법 제129조).

Q9. 처리가능한 업무 중 열거되지 않은 업무도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예금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들(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등)에 대한 대리권도 보유하고 있다고 봄. 대리권의 범위는 그 권한과 부수관계에 있는 사항이나, 부수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본래의 사항과 관련이 있고, 본인에게 새로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도 미치기 때문임.

Q10.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이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피특정후견인은 단독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다만, 피특정후견인이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피특정후견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지참한 후견인이 아닌 제3자가 방문한 경우 등 명백히 피특정후견인 본인의 의사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Q11. 최근 심판문을 보면 후견인을 공동으로 선임이 되어 있고,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 성년후견인으로 A, B를 선임한다.

위 각 권한은 성년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한다.

금융거래에 있어 월간 500만 원 초과한 금액을 인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질의) 1. 잔액증명서, 계좌 거래내역서 등 정보제공 성격의 업무 처리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2.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요청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3. 금융거래제한 내용에 따른 인출한도등 금융거래제한 사항 등록 시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1.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2. 공동으로 행사해야 함.

3. 은행이 확인하고, 등록하는 것이므로,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할 일이 아님.

Q12.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후견인이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 및 잔액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이를 처리해줘야 하는지

계좌이체 등 예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융거래정보 조회업무는 처리해줘야 함.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이 종료하는데, 이때 후견인은 종료 1개월 이내에 관리에 대한 계산을 하여 최종 보고서 형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민법 제957조 제1항), 이 보고서에는 잔액증명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금융거래정보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발급해줘야 함.

또한, 후견이 종료되더라도, 후견인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는바(민법 제959조, 제691조), 이와 같은 금융거래정보 조회 업무는 전술한 후견인의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함.

Q13. 예금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심판문상 은행 또는 계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각 은행별(또는 전체 보유계좌 합산) 인출한도로 해석하면 되는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함. 담당자가 피후견인 명의의 타행 계좌 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당행 계좌에 한하여 월 이체 한도액을 초과하여 인출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나아가 매번 피후견인 명의의 당행계좌 전체의 인출액을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므로, 후견인으로 하여금 1개 계좌에서만 인출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을 것임.

법원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인출할 수 있는 예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은 후견인을 통제하기 위함이고, 은행에게 예금인출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님. 그러므로 예·적금을 제외하고, 인출금이 일어나는 계좌를 1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과 협의하면, 후견인과 은행 모두 업무처리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임.

Q14. 예금인출 한도 제한 기간이 '월(月)이 아닌 '년'(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매년 1월부터 12월로 해석해야 하는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액으로 계산해야 함.

Q15. 아래의 사례에서 2023년 1월 15일에 5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한지?

- (1) 후견등기상 계좌별 매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2023년 1월 12일 1,000만 원 지급
- (3) 1,000만 원 지급 이외 별도 지급거래가 없음

1월 12일 1,000만 원 인출한 경우, 1월 인출한도는 이미 소진된 것이므로, 2월부터 500만 원 한도에서 인출가능함.

다만, 1,000만 원 인출에 대한 법원의 허가 심판 주문에 "월 인출한도 5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또는 "월 500만 원 인출한도와 별개로"라는 문구가 있다면, 1월 중에 추가하여 5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음.

Q16.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려는데, 임대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받을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지?

피후견인이 임대인인 건물의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것은 임차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님. 임대인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어떤 법적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법원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단, 만약 피후견인이 거주하던 부동산(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함(민법 제947조의2 제5항).

Q17.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발급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이 없다면 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명확히 카드 발급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만 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성년후견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을 보유한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은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 권한이 있음.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에 대한 대리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대리권(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에 대한 대리권 등)이라는 기재만 있으면 충분함. 체크카드, 현금카드 발급은 금융거래를 위한 부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임.

Q18. 피후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상속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상속의 단순승인이 법원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Q19.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법원의 허가사항' 중 '금전을 빌리는 행위'에 피후견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후견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도 사적 금전 소비대차로 보아 '금전을 빌리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지?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함. 만약,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금전을 빌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법원허가는 물론이고, 후견인이 아닌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야 함(민법 제940조의6 제3항, 제949조의3, 제921조).

만약,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 계좌에서 후견인 계좌로 금전이 이체하려고 하는 것은 후견인의 권한남용행위 내지 재산범죄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급을 거절해야 함.

1. 도입배경

-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하여 후견인이 그의 의사와 선호를 반영하여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신상결정권한을 대행함으로써 사회에 통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당사자의 의사능력 및 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음. 그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 아래 새로운 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¹¹⁾

2. 성년후견제도 내용

가. 후견제도 개괄

(1) 성년후견제도의 종류

-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인에 대한 후견으로 나눌 수 있음. 그리고 성인에 대한 후견은 후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법정후견은 그 대리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뉨. 이를 표로 나타낼 경우 다음과 같음.¹²⁾

후견제도				
미성년후견	성인에 대한 후견			
	임의후견	법정후견		
		후견계약	성년후견	한정후견
미성년후견인	임의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11)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2018

12) 사단법인 온을, 치매공공후견 업무매뉴얼 개발을 위한 연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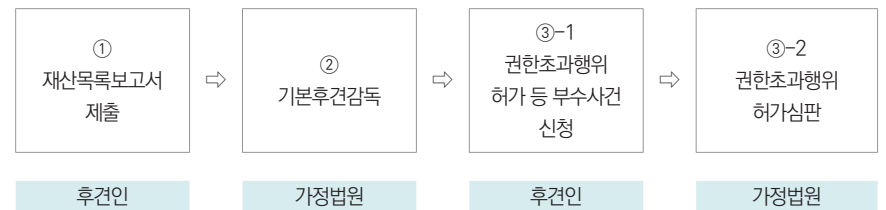
-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신상에 대한 결정을 대행하는 자를 **후견인**이라고 하고, 그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인을 대신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후견감독인**이라고 함. 일단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반드시 선임되어야 하나, 후견감독인은 법원의 재량으로 선임함. 현재 실무상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단, **공공후견사업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고 있음.**

- 성인에 대한 후견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취소권	○	△	X	X
피후견인 능력제한	○	△	X	X
대리권범위	포괄	제한 (열거식)	제한 (열거식)	제한 (열거식)
후견종료	정신적 제약 소멸, 피후견인 사망	정신적 제약 소멸, 피후견인 사망	기간만료 , 정신적 제약 소멸, 피후견 인 사망	계약에서 정하는 사유,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법원 허가, 피후견 인 사망
후견감독인	임의기관 (법원재량)	임의기관 (법원재량)	임의기관 (법원재량)	필수기관 (반드시 선임)

(2) 후견개시 이후 사무수행과정

- 후견이 개시된 이후 기본적인 후견사무 진행 개요는 아래 도표와 같음.





나. 성년후견

(1) 성년후견의 의의

-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를 의미함.¹³⁾ 여기에서 “정신적 제약”이란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을 모두 포함함.

(2) 성년후견인의 권한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음. 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후견개시심판에서 제한하는 행위는 대리할 수 없음.
-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권한을 그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¹⁴⁾.
- 한편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이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

13) 민법 제9조 제1항

14) 민법 제938조 제3항, 제947조의2 제1항

하는 이상,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3)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 무효이며, 피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음¹⁵⁾
- 단,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¹⁶⁾,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음.¹⁷⁾

(4)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권한 분장

- 법원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음.¹⁸⁾
-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사무를 분장하여 공동으로 또는 각자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음.

(5)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성년후견인이 민법에서 정하거나 후견개시심판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그중 민법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법률행위는 다음과 같음.

1) 거주 부동산 처분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¹⁹⁾²⁰⁾

15) 민법 제10조 제1항

16) 민법 제10조 제2항

17) 민법 제10조 제4항

18) 민법 제930조 제2항

19) 민법 제947조의2 제5항

20) 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에 해당하지만,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대한 처분은 신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는 것임.

2) 격리행위, 침습적 의료행위

-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할 때, 중대한 수술과 같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또는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침습적 의료행위를 동의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²¹⁾

3) 후견개시심판에서 제한하는 행위

- 민법 제950조²²⁾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 밖에도 매월 금융계좌에서 이체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지급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할 수 있음.

(6)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성년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²³⁾
- 금전을 빌리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고,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증여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임.
- 실무상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위와 같이 **성년후견감독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대리권을 제한**하고 있음.

(7) 후견 종료

- 성년후견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거나, 한정후견개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심판이 있는

21) 민법 제957조의2 제2항, 제3항

22)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23) 민법 제950조 제1항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종료함²⁴⁾.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후견이 종료하고, 별도로 가정법원의 후견종료심판이 필요한 것은 아님.²⁵⁾

다. 한정후견

(1) 한정후견의 의의

-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임.²⁶⁾

(2) 한정후견인의 권한

-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수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가짐.
-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대한 결정권한을 그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²⁷⁾.

(3)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²⁸⁾. 그 외의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하게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음.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그의 동의없이 하였을 때는 무효**이며, 한정후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²⁹⁾.

24) 민법 제11조, 제959조의20

25) 후견이 개시되는 원인인 정신적 제약(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의 대부분은 현대 과학으로는 소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년후견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는 수밖에 없음.

26) 민법 제12조 제1항

27) 민법 제959조의4, 제938조 제3항, 제959조의6, 제947조의2 제1항

28) 민법 제13조 제1항

29) 민법 제13조 제4항. 단,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음.

(4) 한정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권한 분장³⁰⁾

- 법원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음.³¹⁾
- 한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한정후견인이 사무를 분장하여 **공동으로 또는 각자**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음.

(5)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한정후견인의 경우에도 성년후견과 마찬가지로 민법에서 정하거나³²⁾, 후견개시심판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대리할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³³⁾

- 한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³⁴⁾
- 금전을 빌리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고,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는 증여임.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임.
- 실무상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위와 같이 **한정후견감독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대리권을 제한**하고 있음.

(7) 후견 종료

- 한정후견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하거나, 성년후견개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의 심판이 있는

30) 민법 제959조의3 제2항, 제930조 제2항, 제959조의6, 제949조의2

31) 민법 제930조 제2항

32) 민법 제959조의6, 제947조의2

33) 민법 제959조의6, 제950조 제1항

34) 민법 제950조 제1항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종료함³⁵⁾. 피한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후견이 종료하고, 별도로 가정법원의 후견종료심판이 필요한 것은 아님.³⁶⁾

라. 특정후견

(1) 특정후견의 의의

-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임.

(2) 특정후견인의 권한

- 특정후견 피후견인에 대한 특정한 사무의 후원을 위하여 개시되는 유형이므로,³⁷⁾ 후견기간이 정해져 있고³⁸⁾, 특정후견인은 그 사무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대리권을 보유함.³⁹⁾

(3) 피특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 특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음.

(4)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권한 분장⁴⁰⁾

- 법원은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의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음.⁴¹⁾
- 특정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이 사무를 분장하여 **공동**

35) 민법 제14조, 제959조의20

36) 후견이 개시되는 원인인 정신적 제약(발달장애, 정신장애,치매)의 대부분은 현대 과학으로는 소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년후견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는 수밖에 없음.

37) 민법 제14조의2

38) 민법 제14조의2 제3항

39) 민법 제959조의11 제1항

40) 민법 제959조의12, 제949조의2

41) 민법 제930조 제2항

으로 또는 각자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음.

(5)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특정후견인은 후견개시심판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주로 **의 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나아가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⁴²⁾.

(6)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특정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후견개시심판에서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하여 특정후견인은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그 행위를 대리해야 함.

(7) 후견 종료

- 특정후견은 기간의 만료, 후원이 필요한 사무의 완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이 있거나 피특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종료됨⁴³⁾. 피특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당연히 후견이 종료하고, 별도로 가정법원의 후견종료심판이 필요한 것은 아님.⁴⁴⁾

(8) 참고 : 공공후견제도

- 공공후견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 복지제도로써, 후견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후견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임.⁴⁵⁾
-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 치매고령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발달장애인, 치매고령자에 대한 공공후견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은

42) 민법 제959조의8

43) 민법 제14조의3, 제959조의20

44) 후견이 개시되는 원인인 정신적 제약(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의 대부분은 현대 과학으로는 소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년후견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하는 수밖에 없음.

45) 그중 공공후견법인은 정부의 비용으로 선임되는 후견법인을 의미함. 공공후견법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경우, 공공후견법인은 법인의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후견업무를 수행함.

한정후견을 원칙으로 이용하고 있음.

- 내방한 후견인이 공공후견인인지 여부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상 후견감독인이 지방자치단체로 선임되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음.

마. 임의후견(후견계약)

(1) 임의후견(후견계약)의 의의

- 임의후견은 본인이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향후 자신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개인 간에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후견인을 선임하고, 향후 후견개시사유가 발생하면,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을 통해 후견이 개시되는 제도임⁴⁶⁾.
- 후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의후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신상결정권, 대리권을 보유함.

(2) 임의후견인의 권한

-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권과 신상에 대한 결정권한을 지님⁴⁷⁾.

(3) 피임의후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력

- 임의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피임의후견인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4) 임의후견인이 여러 명일 경우 권한 분장

- 복수의 임의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권한의 범위나 행사방법 등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후견계약에서 정할 수 있음.⁴⁸⁾

46)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47)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48)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 해설, 2013

(5)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후견계약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함.

(6) 임의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후견계약 또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률행위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함.

(7) 후견 종료

-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종료됨.⁴⁹⁾
- 또한, 임의후견인이 해임된 경우, 임의후견인이 사망한 경우⁵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⁵¹⁾,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후견계약은 종료함.

49) 민법 제959조의18

50) 후견계약 체결 시 임의후견인이 해임되거나 사망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예비적 임의후견인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확립된 실무는 없으나, 법원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임. 본 매뉴얼에서도 법원의 입장을 따라 예비적 임의후견인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면, 임의후견인이 해임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임의후견이 종료한다고 보아야 함.

5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